

수신:공정거래위원회출입기자 수신:경 제 부 장

이 자료는 4월 21일(수요일)
석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.



보도자료

공정거래위원회

(총 3쪽)

작 성 과	하도급기획과 (과장 유희상)
작 성 자	사무관 구상모
전화번호	503-8894~5

개정 하도급법령 시행

-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강철규)는 하도급법 개정('04.1.20. 공포, 법률 제7107호)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지연이율고시를 개정하여 '04. 4. 21.부터 시행
- 개정 시행령에서는,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, 시정 조치유형별 부과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
 -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,
 -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, 이를 수급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하고
 - 압류 등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,

-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하여야 하는 경우,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및 지급기한은 (월)도급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하였음
- 이러한 조치로 인해, 직접지급 절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분쟁을 조속히 안정시켜 직접지급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
- 또한, 시정조치유형별 하도급별점의 조정과 관련하여서는,
 -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부과하던 조치유형별 점수(0.5점)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
 -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경고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현장직권조사에 따른 경고의 경우에 비하여 낮은 별점(1→0.5)을 부과하도록 조정
 - 이러한 조치로 인해,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기능이 활성화 되고, 서면실태조사에 있어 위반행위의 자진시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
- 또한, 선금금, 하도급대금 등의 지연이율을 고시함에 있어,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금융기관 연체금리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하도록 한 개정 법률의 위임내용에 따라
 - 『선금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』를 개정하여 지연이율을 현행과 같이 연 25%로 고시
 - 이는 '03년말 시중은행의 최고연체이자율(연 20%)에 선금금 등의 지연지급을 억제하기 위하여 5%p를 가산한 수준

<별첨>

개정 하도급법(법률 제7107호)의 주요내용 - '04.1.20공포, 4.21.시행 -
--

□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

-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
- 직접지급절차에 있어 원사업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,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
-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

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강화

- 건설공사에 있어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

□ 하도급법상 지연이율 위임규정의 구체화

- 위임의 상한을 정하고, 지연이율을 고시하면서 고려할 사항을 명시

: 『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』